

(Match code :)

지불 통화 약정서

하파그로이드 코리아 (주) (이하 “갑” 이라 칭함) 과 _____ (이하 “을” 이라 칭함) 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계약에서 발생 한 모든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

제 1 조 (약정의 목적)

“갑”은 선하증권의 약관에 따라 “을”의 화물을 운송하고 “을”은 본 약정서에 정한 통화 조건으로 운임과 부대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불 통화 조건)

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갑과 을에 합의된 운임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즉시 지불 한다.

- 해상운송 계약에서 발생 된 모든 비용은 인보이스에 표기 된 “계약 통화” (Tariff currency)로만 지불한다. 단 USD / KRW 를 제외한 제 3 국의 통화로 계약 된 경우, 인보이스에 표기 된 원화로 지불한다.

제 3 조 (약정기간 및 변경)

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상호 서명 일로부터 12 개월로 하며 기간만료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“지불 통화 변경 신청”을 하지 않는 한 약정 된 통화로 계속 지불 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기타)

- 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(약정 되지 않은 통화로 지불 시) 해상운송에 대한 제약 및 불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.
-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 약정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작성일자 년 월 일

갑 : 하파그로이드 코리아 (주)

을 :